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차 개정안 국회통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차 개정안이 ’99년 1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30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신설하였으며, 종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오던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인과의 합작주식회사의 설립등을 통한 외자유치 및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 등을 유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였다.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부실기업등 예외인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종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에 대하여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결합 위반에 대해 과징금 대신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추정제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규율함과 아울러 독과점시장구조 조사·공표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 창달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하였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99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다만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공포 즉시 발효될 계획으로 있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事業者”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事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者の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 從業員 代理人 기타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관한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p> <p>가. 製造業</p> <p>나. 電氣·ガス 및 水道事業</p> <p>다. 建設業</p> <p>라.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p> <p>마. 宿泊 및 飲食店業</p> <p>바. 運輸·倉庫 및 通信業</p> <p>사. 金融 및 保險業</p>	<p>第2條(定義)</p> <p>1. “事業者”라 함은 製造業, 서비스業, 기타 事業을 行하는 者를 말한다.</p> <p>〈削除〉</p>

공정위업무활동

現 行	改 正 案
아. 不動產 · 貸貸 및 事業서비스業	
자. 教育서비스業	
차.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	
카. 기타 公共 ·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	
타. 家事서비스業	
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新 設〉	
〈新 設〉	
2. “企業集團”이라 함은同一人이 다음各目의 구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會社(第1號에 規定한 事業의 事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의 集團을 말한다.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事業 내용을支配하는 것을 主된 事業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產總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 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事業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가. ~ 나. (생 誰)	1의3.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
3. ~ 6. (생 誰)	2.
7. “市場支配的事業者”라 함은 同種 또는 유사한 商品이나 用役의 供給에 있어서 市場占有率이 다음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에 해당하는 事業者를 말한다. 다만,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가.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50이상
나.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10미만인 者를 제외한다
8. ~ 9. (생 誰)	가. ~ 나. (現行과 같음)
第3條(獨寡占的 市場構造의 개선등)	3. ~ 6. (現行과 같음)
① ~ ② (생 誰)	7. “市場支配的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單獨으로 또는 다른 事業者와 함께 商品이나 用役의 가격 · 수량 · 품질 기타의 去來條件를 決定 · 維持 또는 變更할 수 있는 市場地位를 가진 事業者를 말한다. 市場支配的事業者를 観念함에 있어서는 市場占有 rate,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競爭事業者의 상대적 規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年間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億원미만인 事業者를 제외한다.
〈新 設〉	8. ~ 9. (現行과 같음)
	第3條(獨寡占的 市場構造의 개선등)
	① ~ ② (現行과 같음)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시책을 樹立 · 推進하기 위하여 市場構造를 調査하여 公表한다.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3項에

공정위업무활동

現 行	改 正 案
<p>業結合에 관한 기준은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告示할 수 있다.</p> <p>第8條(持株會社의 設立禁止 등) ① 누구든지 株式의 所有를 통하여 國內會社의 事業內容을支配하는 것을 主된 事業으로 하는 會社(이하 “持株會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 없으며 이미 設立된 會社는 國內에서 持株會社로 轉換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第1項의 規定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法律에 의하여 設立하는 경우 2. 外國人投資 및 外資導入에 관한 法律에 의한 外國人投資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設立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 <p>〈新 設〉</p>	<p>는 企業結合</p> <p>第8條(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 持株會社를 設立하고자 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p>
	<p>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 ① 持株會社는 다음 각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純資產額(資產總額에서 負債額을 差減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會社가 資產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會社에 現物出資하고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1年間은 純資產額을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할 수 있다. 2. 子會社의 株式을 당해 子會社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50(당해 子會社가 1999年 4月 1日 현재 株券上場法人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으로 所有하는 행위. 다만, 會社가 資產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會社에 現物出資하고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 持株會社로 轉換할 당시에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때에는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2年間은 예외로 한다. 3. 子會社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目的으로 所有하는 행위. 다만, 會社가 資產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會社에 現物出資하고 持株會社로 轉換하는 경우 持株會社로 轉換할 당시에 다른 國내會社의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때에는 持株會社로 轉換한 날부터 2年間은 당해 國내會社가 發行한 株式을 所有

.....
公正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할 수 있다.</p> <p>4.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p> <p>5. 金融持株會社의 持株會社(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내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p> <p>② 一般持株會社의 子會社는 다른 國내會社(당해 子會社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 및 당해 子會社를支配하는 一般持株會社의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의 株式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配目的으로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子會社가 一般持株會社의 子會社가 될 당시에 所有하고 있던 다른 國내會社의 株式(新株引受權의 행사 또는 株式配當에 의하여 취득하는 株式을 포함한다)은 그 子會社가 된 날부터 2年間은 이를 所有할 수 있다.</p> <p>③ 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第8條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u>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 등)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를支配하는同一人 또는 당해同一人的特殊關係人이持株會社를設立하고자하거나持株會社로轉換하고자하는 경우에는 第10條의3(기존債務保證의解消)의規定에의한 기존債務保證으로서 다음各號의1에 해당하는債務保證을解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持株會社와子會社間의債務保證 2. 持株會社와 다른 國내系列會社 (당해持株會社가支配하는子會社를 제외한

〈新 設〉

공정위업무활동

現 行	改 正 案
<p>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結合을 하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查를 요청할 수 있다.</p> <p>⑦公正去來위원회는 第6項의 规定에 의하여 審查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 이내에 그 審查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p> <p>⑧(생략)</p> <p>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p> <p>①(생략)</p> <p>②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제한) 및 第13條(株式所有現況 등의 申告)規定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통지를 있는 날부터 適用한다.</p> <p>③第2項의 规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规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會社가 통지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第1項 또는 第3項의 规定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通知가 있는 날부터 1年間은 同項의 规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④ ~ ⑤(생략)</p> <p>〈新設〉</p> <p>第14條의3(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 (생략)</p> <p>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 누구든지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第8條(持株會社의 設立禁止등)第1項,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등),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p>	<p>結合을 하자 하는 자는 第4項에 规定된 申告期間 이전이라도</p> <p>⑦</p> <p>그 期間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60日의</p> <p>⑧(現行과 같음)</p> <p>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p> <p>①(現行과 같음)</p> <p>②</p> <p>통지를 받은 날</p> <p>③ 통지받을 당시</p> <p>④ ~ ⑤(現行과 같음)</p> <p>第14條의3(系列會社의 編入·통지일의 摘制)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4項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第2項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提出함으로써 大規模企業集團의 所屬會社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그 大規模企業集團의 所屬會社로 편입·通知된 것으로 본다.</p> <p>第14條의4(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 (現行과 같음)</p> <p>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 ① 第8條의2(持株會社의 行為 제한 등)第1項 및 第2項, 第8條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p>

공정위업무활동

現 行	改 正 案
第1項, 第10條의3(既存債務保證의 解消)第1項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 략)	② (現行과 같음)
第16條(是正措置)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및 第3項, 第8條(持株會社의 設立禁止 등)第1項,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第10條의2(系列 會社에 대한 新規債務保證의 금지)第1項, 第10條의3(既存債務保證의 解消)第1項,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u>당해事業者</u>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각號의 1의 是正措置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期間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u>第8條의2(持株會社의 行위 제한 등)第1項 및 第2項, 第8條의3(債務保證制限 대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u> <u>當事事業者[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第1號 또는 第5號에 위반한 경우에는 企業結合 當事會社를 말한다]</u>
1. ~ 6. (생 략) <u>〈新設〉</u>	1. ~ 6. (現行과 같음) <u>7. 企業結合에 따른 競爭制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營業方式 또는 營業範圍의 제한</u>
7. (생 략)	8. (現行과 같음) ② <u>第8條의3(債務保證制限 대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u>
第17條(課徵金) ① ~ ② (생 략) <u>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企業結合을 한者에 대하여 다음 각號의 금액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5億 원의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u>	第17條(課徵金) ① ~ ② (現行과 같음) <u>〈削除〉</u>
1.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所有한 株	

現 行	改 正 案
<p>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p> <p>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併의 대가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p> <p>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p> <p>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課徵金을 賦課하는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p>	<p>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다음 각號의 금액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p> <p>1.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純資產額을 초과한 負債額</p> <p>2.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第2號本文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子會社株式의 帳簿價額의 合計額에 100分의 50(당해 子會社가 1999年 4月 1日 현재 株券上場法人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당해 子會社株式의 所有比率을 差減한 比率을 곱한 금액을 당해 子會社株式의 所有比率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p> <p>3. 第8條의2(持株會社의 행위제한 등)第1項第3號本文 · 第4號 · 第5號 또는 同條第2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所有하는 株式의 帳簿價額의 合計額</p> <p>第17條2(履行強制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16條(是正措置)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措置를 받은 후 그 정한 期間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매 1日當 다음 각號의 금액에 10,000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履行強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매 1日當 200萬원의 범위안에서 履行強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p> <p>1.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所有한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債務의 合計額</p>

<新 設>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p>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併의 대가로 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p> <p>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 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p> <p>② 履行強制金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滯納된 履行強制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強制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p>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 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合意(이하 “부당한 共同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당하게 競爭을
1. ~ 8. (생략) ② (생략)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1. ~ 8. (現行과 같음) ② (現行과 같음)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 ⑤ (現行과 같음)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① (생략) 1. (생략)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기 위하여 去來하는 행위 3. ~ 7. (생략) 〈新設〉 ② ~ ⑤ (생략)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 3. ~ 7. (現行과 같음) 8. 第1號 내지 第7號 이외의 행위로서 公正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 ⑤ (現行과 같음) 〈削除〉
第25條(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 事業者團體는 그 設立日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設立事項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이 變更되거나 당해 事業者團體가 解散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정위업무활동

現 行	改 正 案
<p>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 ①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公正去來委員會가 지정·告示한商品을 生產 또는 販賣하는事業者가 당해商品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契約締結日로 부터 30일이내에 그契約事項을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契約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申告事項이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公共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申告事項의 變更 또는 修正을 命할 수 있다.</p>	<p>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公正去來委員會가 指定·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事業者가 당해 상품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契約이 消費者的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公共의 이익에 反하는 경우에는 契約內容의 修正을 命할 수 있다.</p>
<p>第38條(委員長)</p> <p>① ~ ②(생략)</p> <p>③ 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지정한 常任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p>	<p>第38條(委員長)</p> <p>① ~ ②(現行과 같음)</p> <p>③</p> <p>..... 先任常任委員順으로 그職務를 代行한다.</p>
<p>第42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p> <p>① 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 副委員長 및 先任常任委員의 順으로 主宰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p> <p>②(생략)</p>	<p>第42條(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p> <p>① 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이 主宰하며</p> <p>.....</p> <p>②(現行과 같음)</p>
<p>第43條(審議의 公開)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는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業上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43條(審理·議決의 公開 및 合議의 非公開)①公正去來委員會의 審理와 議決은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業上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公正去來委員會의 사건에 관한 議決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p>
<p>第45條(委員의 記名·捺印)公正去來委員會가 이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議決書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여한 委員이 그 議決書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p>	<p>第45條(委員의 署名·捺印).....</p> <p>..... 署名.....</p>
<p>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p>	<p>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p>

공정위업무활동

現 行	改 正 案
〈新 設〉	<p>받은 者는 그 資料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52條의2(資料閲覽要求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資料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公正去來委員會는 자료를 제출한 者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第53條(異議申請) ① 이 法에 의한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處分의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p> <p>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30日이내에裁決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期間내에裁決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決定으로 그기간을 延長할 수 있다.</p> <p>第53條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p> <p>① (생 략)</p> <p>② 이 法에 의한公正去來委員會는 執行停止의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當事者の申請 또는職權에 의하여決定으로써 執行停止의決定을取消할 수 있다.</p>	<p>第53條(異議申請) ①</p> <p>通知.....</p> <p>.....</p> <p>②</p> <p>..... 60日이내</p> <p>.....</p> <p>.....</p> <p>第53條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p> <p>① (現行과 같음)</p> <p>②</p> <p>..... 職權에 의하여</p> <p>.....</p>
<p>第54條(訴의 제기) ① 이 法에 의한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의 訴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異議申請에 대한裁決의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第55條의3(課徵金 賦課) ① · ② (생 략)</p> <p>③ 課徵金의 賦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4條(訴의 제기) ①</p> <p>..... 때에는 處分 또는異議申請에 대한裁決書의 정본을送達받은 날부터</p> <p>② (現行과 같음)</p> <p>第55條의3(課徵金 賦課) ① · ② (現行과 같음)</p> <p>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5條의4(課徵金 納付期間의 延長 및 分割納付)</p> <p>① ~ ③ (생 략)</p> <p>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間의 延長,分割納付 또는擔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5條의5(課徵金徵收 및 滯納處分) ①公正去來</p>	<p>第55條의4(課徵金 納付期間의 延長 및 分割納付)</p> <p>① ~ ③ (現行과 같음)</p> <p>④</p> <p>..... 또는 分割納付</p> <p>.....</p> <p>第55條의5(課徵金徵收 및 滯納處分) ①</p>

現 行	改 正 案
<p>定에 의한 是正措置 등에 응하지 아니한 者</p> <p>7. (생 략)</p> <p>第68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億 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4條(市場支配的事業者の 지정·告示)第2項 및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4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 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p> <p>2.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p> <p>3. <삭제 96.12.30></p> <p>4.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所有現況 또는 債務保證現況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p> <p>5. 第25條(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의 設立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p> <p>6.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申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販賣價格維持契約事項 또는 變更契約事項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p> <p>7. <삭제 94.12.22></p> <p>8.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 <新設></p> <p>第69條(罰則) 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7. (現行과 같음)</p> <p>第68條(罰則)</p> <p>1. 第8條(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의 設立 또는 轉換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p> <p>2. 第8條의2(持株會社의 行위제한 등)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 및 子會社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p> <p>3. 第13條(株式所有現況 등의 申告)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所有現況 또는 債務保證現況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p> <p>4. 第14條(大規模企業集團의 지정등)第4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p> <p><削除></p> <p><削除></p> <p>5.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1項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p> <p>6.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6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p> <p>第69條(罰則) ①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8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
공정위업무활동
.....

現 行	改 正 案
第69條의2(過怠料) ① (생 략) 1. (생 략) <u>〈新 設〉</u>	第69條의2(過怠料) ① (現行과 같음) 1. (現行과 같음)
2 ~ 5. (생 략) <u>〈新 設〉</u>	2. 第12條(企業結合의 申告)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者 또는 同條第5項의 규정에 위반한 者 3. ~ 6號로 號番변경 (現行과 같음)
② ~ ⑥ (생 략)	7.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 등)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情報의 提出을 거부한 者 ② ~ ⑥ (現行과 같음)
附 則 <u>〈新 設〉</u>	附 則 ③ (有效期間 만료에 따른 經過措置)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 (現行과 같음)
③ (생 략)	



■ 국장급 전보

- ▶ 기획관리관 유 철(柳 哲, 前 경쟁국장)
- ▶ 경쟁국장 오성환(吳晟煥, 前 공정거래위원회)
- ▶ 조사국장 김병배(金炳培, 前 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
- ▶ 중앙공무원교육원 과장 이동욱(李東旭, 前 기획관리관)
- ▶ 국방대학원 과장 박상조(朴相祚, 前 조사국장)

■ 부이사관 교육파견

- ▶ 세종연구소 과장 여 선(許 宣, 前 기획예산담당관)

■ 3급과장 전보

- ▶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수(朴鍾秀, 前 조사1과장)
- ▶ 기획과장 정재찬(鄭在餐, 前 공동행위과장)

■ 4급과장 전보

- ▶ 행정법무담당관 이성구(李星求, 前 공정거래위원회)
- ▶ 제도개선과장 최정렬(崔楨烈, 前 약관심사1과장)
- ▶ 기업집단과장 이재구(李載求, 前 공정거래위원회)
- ▶ 공동행위과장 이삼봉(李三奉, 前 하도급1과장)
- ▶ 단체과장 허찬무(許贊茂, 前 제도개선과장)
- ▶ 표시광고과장 김태구(金泰球, 前 하도급2과장)
- ▶ 약관심사1과장 김동주(金同周, 前 표시광고과장)
- ▶ 하도급1과장 신호현(申豪鉉, 前 국제업무1과장)
- ▶ 하도급2과장 김태영(金泰亨, 前 공정거래위원회)
- ▶ 조사1과장 정병기(鄭秉璫, 前 기업집단과장)
- ▶ 공정거래위원회 안영호(安永鎬, 前 단체과장)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파견 내정)